
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(윤종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66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20.

발 의 자 : 윤종균 · 임호선 · 김영환
이연희 · 복기왕 · 한준호
모경중 · 서영석 · 김태년
박용갑 · 노종면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철도사업자가 철도의 이용과 관련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좌석 예약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지만, 전반적인 교통수단에 대해서 교통약자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예약체계 마련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.

그런데 여객기, 여객선, 고속버스 등 대부분의 교통수단의 예약체계가 비대면 정보화 방식으로 변화함에 따라 디지털 리터러시가 낮은 노인, 시각정보를 얻기 어려운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교통수단을 예약할 수 있는 체계의 제공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항목으로 교통수단 예약체계에 대한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, 교통사업자

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약자 등이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며,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관련 실태조사의 항목으로 교통수단 예약체계에 대한 교통약자의 만족도를 추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(안 제6조제2항제8호, 제17조제3항 및 제25조제1항제5호의3 신설).
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교통수단 예약체계에 대한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개선에 관한 사항

제17조의 제목 중 “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”를 “교통이용편의서비스 등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“교통이용편의 서비스의”를 “교통이용편의서비스 및 제3항에 따른 교통수단 예약서비스의”로 한다.

- ③ 교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약자 등이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.

제25조제1항에 제5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5의3. 교통수단 예약체계에 대한 교통약자의 만족도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6조(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) ① (생략)	제6조(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.
1. ~ 7의2. (생략)	1. ~ 7의2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8. <u>교통수단 예약체계에 대한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개선에 관한 사항</u>
8. · 9. (생략)	9. · 10. (현행 제8호 및 제9호와 같음)
③ ~ ⑤ (생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
제17조(<u>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</u>) ① · ② (생략)	제17조(<u>교통이용편의서비스 등의 제공</u>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③ <u>교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약자 등이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.</u>
③ <u>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 방법, 운영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</u>	④ <u>교통이용편의서비스 및 제3항에 따른 교통수단 예약서비스의</u> ----- -----

제25조(실태조사) ① 국토교통부 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.

1. ~ 5의2. (생략)

<신설>

6. (생략)

② ~ ④ (생략)

제25조(실태조사) ① -----

1. ~ 5의2. (현행과 같음)

5의3. 교통수단 예약체계에 대한 교통약자의 만족도

6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